

대구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4930 판결 [이득상환금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변론 종결 2019. 2. 28.

판결 선고 2019. 3. 21.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332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값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1행의 "2009. 8."을 "2009. 8.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1행의 "2010. 9."을 "2010. 9. 1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2행의 "그 무렵"을 "2010. 9. 2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4행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로서 2003. 12. 15.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점(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어 C이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②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산 및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추심업체에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는바 피고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독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다는 등 그 소멸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바, 피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④ 단순히 채무를 잊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았으나 과실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경희, 판사 양진호, 판사 박경모